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93
----------	-------

제출년월일 : 2024. 2.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 도모

□ 주요내용

- 『안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 공공시설등의 설치 가능 시설 추가(안 제15조의3)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방법 마련(안 제15조의3)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안 제15조의4)
-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16조, 제23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안 제23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별도 적용(안 제33조)
-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예외 사항 규정(안 제34조)
-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기준 완화(안 제35조)
- 자연 또는 특화경관지구 내 대지안의 조경 기준 완화(안 제36조)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적용 용적률 조정(안 제56조)
-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안 제56조)
-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 · 용적률 완화(안 제51조, 제56조)
- 골재수급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 반영(안 [별표 16])
- 현행 관련법령(규정)에 적합하게 용어정리 및 인용조문 정비

- 개정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붙임 5】
 - 기간 : 2023. 11. 14. ~ 12. 4.(20일간)
 - 예고 결과 : 의견제출 39건(반영 2건, 일부반영 36건, 미반영 1건)
 -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붙임 6】
 - 기간 : 2024. 1. 12. ~ 1. 22.(10일간)
 - 공표 결과 : 의견제출 1건(일부반영 1건)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7】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원안가결) : 【붙임 8】
 - 방침결정문(2부) : 【붙임 9, 붙임 10】

【불임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안서 중 공공기여, 사업(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⑧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5조의4 중 “한다”를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15도 이하”를 “17도 이하”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생산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500제곱미터”로, “5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5”를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으로 한다.

제33조 중 “40페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40페센트 이하로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5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경우에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제3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 본문 중 “대지면적의 40페센트”를 “대지면적의 10페센트”로 한다.

제51조제5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 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9. 근린상업지역 : 800페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0페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 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 페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의 개정규

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관 실·과		도시계획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이광재
	담당자 성명·전화	임병찬 (행정 2373)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동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불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 ④ (생략) <u>< 신설 ></u></p>	<p>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안서 중 공공기여, 사업(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p>
<p>제15조의3(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삭제 ② ~ ⑤ (생략) <u>⑥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제15조의3(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u>⑥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p> <p>3.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 ·</p>

현 행	개 정 안
<p>⑦ (생 략)</p> <p><u>< 신 설 ></u></p>	<p><u>관리 ·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u></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제15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제15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 ----- ----- ----- ----- <u>하며,</u> <u>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u>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제1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1의2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은 녹지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p> <p>1. ~ 2. (생 략)</p> <p>3. 개발행위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토지</p> <p>② ~ ③ (생 략)</p>	<p>제1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17도 이하-----</u> 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u>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u></p> <p>② (생략)</p>	<p>제16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성장관리계획</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p> <p>① (생략)</p> <p>② <u>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u>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3,000제곱미터(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염전·유지인 <u>생산</u> 녹지지역,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p>	<p>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u> ----- <u>생산</u> 녹지지역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5</p>

현 행	개 정 안
<p>지지역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u>500 제곱미터</u>)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p> <p>1. ~ 8. (생 략)</p> <p>9. 기준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p> <p>③ (생 략)</p>	<p>00제곱미터-----1,000 <u>제곱미터-----</u> <u>--.</u> 1. ~ 8. (현행과 같음) 9. -----10(여 <u>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u> <u>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u>40퍼센트</u>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p>	<p>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 ----- -----40퍼 센트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5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생 략)</p> <p><신 설></p>	<p>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경우에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p>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p>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는 1,500제곱미터(2개동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p>	<p>의 규모) ----- ----- ----- ----- ----- ----- ----- ---. 다만,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u>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u>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중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 ----- ---<u>대지면적의 10퍼센트</u>----- ----- ----- ----- ----- ----- ----- -----.</p>
<p>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④ (생 략)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p>	<p>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p>

현 행	개 정 안
<p>은 30페센트 이하로 한다.</p> <p>1. (생 략)</p> <p>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p> <p>3. (생 략)</p> <p>⑥ ~ ⑩ (생 략)</p> <p>< 신 설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제2조제3항 ----- --제4항--</p> <p>3. (현행과 같음)</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p>⑪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 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 폐율의 150페센트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페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p>
<p>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 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p> <p>1. ~ 6. (생 략)</p> <p>7. 중심상업지역 : 1,100페센트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 00페센트 이하)</p>	<p>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중심상업지역 : 1,100페센트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60 0페센트 이하로 한다)</p> <p>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 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p>

현 행	개 정 안
<p><u>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u> <u>(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u> <u>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u> <u>00퍼센트 이하)</u></p>	<p><u>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u> <u>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u> <u>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u> <u>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u> <u>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u> <u>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u> <u>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u> <u>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u> <u>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u> <u>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u> <u>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u> <u>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u> <u>한다)</u> <u>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u> <u>(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u> <u>0퍼센트 이하로 한다)</u> <u>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u> <u>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u> <u>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u> <u>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u> <u>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u> <u>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u> <u>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u> <u>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u> <u>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u> <u>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u> <u>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u> <u>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u> </p>
	<p>- 16 -</p>

현 행	개 정 안
<u>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퍼센트 이하)</u>	<u>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u>
	<u>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u>
	<u>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u>
	<u>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 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u>
	<u>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u>
10. ~ 17.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	10. ~ 1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현 행	개 정 안
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u>120</u> 퍼센트 이하로 한다.	----- ----- ----- ----- ----- ----- <u>140</u> 퍼센트-----.
⑤ (생략) <u><신설></u>	⑤ (현행과 같음)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제1항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마. (생략) 바. 별표 1 제17호의 <u>공장 중</u> 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제1항제16호 관련) ----- -----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u>공장 중</u> ----- ----- ----- ----- -----

현 행	개 정 안
<p>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사. ~ 아. (생 략)</p>	<p>-----</p> <p>-----</p> <p>-----</p> <p>-----</p> <p>-----</p> <p>-----</p> <p>사. ~ 아. (현행과 같음)</p>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393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11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상업지역 안에서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축허가를 준비 중인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2024년 6월 1일” 을 “2024년 10월 1일”로 수정
(안 부칙 제1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2024년 6월 1일**” 을 “**2024년 10월 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에서의 제56조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u>2024년</u> <u>6월 1일</u>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 ---. ----- ----- ----- ----- ----- <u>2024년</u> <u>10월 1일</u> -----.